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30 선고 2020가단60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이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만형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7. 3.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847,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각파이프 등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대금은 합계 171,902,830원이었다.

나.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해행위)

1) 소외회사는 2017. 6.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113,847,0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소외회사는 2017. 7. 3.1)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 중 1명이었던 피고에게 위 물품 공급에 따른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7. 8. 17. D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소외회사는 위 채권양도 무렵인 2017. 7.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의 변제

피고는 2017. 8.말경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 17.경 원고와 다른 채권 양수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넘어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과 함께 2018. 1. 17.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존재와 그 사해행위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1년 내에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권의 성립 및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해행위로 주장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회사는 채권자들 중 1명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직전까지 계좌 잔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피고로부터 곧바로 필요한 금액을 소외회사 계좌로 이체받았던 점, ▲소외회사의 대표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기 2~3개월 전인 2017.

4~5.경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래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를 하면서 그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액에 상당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시점

1) 주장의 요지

소외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여 2017. 6. 15.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채권양도 계약서만 뒤늦게 2017. 7. 3. 작성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시점은 “2017. 6. 15.”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을 13호증의 1, 을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6. 15. 2,0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소외회사 계좌로 이체된 사실, 위 2,000만 원이 소외회사 근로자들의 5월분 급여와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F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13호증의 2(채권양도각서)에 기재된 작성일이 2017. 7. 3.인 점,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더 늦은 2017. 8. 17.에 이루어진 점,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7. 6. 15. 소외회사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으나, 그 돈의 액수가 이 사건 채권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까지도 3억 원의 기존 채권 중 2억 원만을 변제받았던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이체를 통해 추가 대여를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입금 거래를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시점은 작성일인 2017. 7. 3.로 볼 수 있을 뿐, 위 이체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어 그에 앞선 채권양도의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무초과의 부인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계산한 적극재산 이외에도 보증금 반환채권, 잔존 기계, 거래처 채권 등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의 총액은 8,174,212,816원에 이르고, 소극재산 총액은 7,757,500,761원이므로, 소외회사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지 적극재산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46,324,472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2)

별지 소극재산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78,636,23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개인인 피고로부터 3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2017. 3.경부터 소외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시까지도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 등을 체납하는 등 계속하여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소외회사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 부인

1) 주장의 요지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납품계약 이행을 통해 경영상황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컸다. 이에 소외회사는 2017. 6.분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2017. 3.경 피고로부터 이미 3억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7. 6.말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1억 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변제하여 준 것이고, 채권양도계약서는 2017. 7. 3.에 직접 만나 작성하였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불가피성, 변제방법으로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 피고 채권의 이자율, 일시적 자금난 해소 필요성, 그 밖에 적극재산 대비 이 사건 채권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회수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은 소외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중 가장 큰 액수였던 점, ▲소외회사는 2017. 3.경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사해행위 전부터 자력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미 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그 양도와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전 피고에게 사업의 존속 기반이 되는 사업장에 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상태였고, 2017. 7. 17.에는 그 양도 통지까지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전까지 소외회사로부터 기존 3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임금으로 사용될 2,000만 원을 이체하고, 소외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사용될 1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그 밖에도 소액의 돈을 소외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체하는 등 소외회사의 자금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회사는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소외회사의 대표자는 그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선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2017. 3.경 소외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3개월만에 채무초과에 빠지게 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점, 소외회사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소외회사의 연체가 시작된 것은 대부분 2017. 8.경 이후인 점, 채무초과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채무초과임을 알았다면 2,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거나 채권양도 통지를 늦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갑 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소외회사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7. 7. 19.부터인 사실, 소외회사의 신용정보 상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7. 7. 초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회사가 약 61억 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부동산에는 2017. 3. 9.경 시흥세무서에 의한 재산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의 주장과 을 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3회 분할하여 2017. 5.말부터 2017. 7.말까지 변제받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은 2회분의 변제기가 경과된 상태였음에도 변제된 돈은 없었던 점(피고와 증인 F은 1회차 1억 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는 I에 대한 채권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I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직후 피고에게 사업장에 관한 임차보증금

채권까지 양도의 통지를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수익자 지위에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양도로 인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별지

적극재산 표

순번	항목	피고 주장액	인정액	이유
1	부동산(H)	5,904,169,750	5,904,169,750 원	다툼 없음
2	임차보증금	120,000,000	12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극재산에 반영하는 것과 균형
3	잔액증명서(기업은행)	16,344,426	20,605,644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4	잔액증명서(J은행)		2,632,348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5	공장내 기계 및 공구	50,000,000	0원	증거부족
6	마작MCT-장축형	171,680,000	0원	피고 소유 아님. 을 34호증
7	삼성장축기(22호기)	55,000,000	0원	리스된 기계로서, 소외회사의 실질적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8	DNM750-1(7.5호기) DNM750-2(7.5호기)	144,000,000	0원	피고 소유 아님(을 38호증). 이에 같은 K에 대한 대금 상당 채권은 실질적 재산가치에 대한 입증 부족함.
9	LS엠트론 사출 성형기	110,220,000	0원	리스된 기계로서, 소외회사의 실질적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10	BM2035M-1(20호기)	345,000,000	0원	리스된 기계로서, 소외회사의 실질적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11	BM2035M-2(20호기) DNM750(7.5호기)	290,000,000	0원	리스된 기계로서, 소외회사의 실질적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12	머시닝센터(BM-2740)	60,206,586	0원	매각대금 채권을 소외회사의 실질적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13	(주)L	18,466,844	2,394,700원	이미 변제로 소멸한 6월분 채권은 제외. 7월분만 적극재산에 산입
14	M	5,564,150	0원	6월분 제외
15	N	6,896,450	626,950원	이미 변제로 소멸한 6월분 채권은 제외. 7월분만 적극재산에 산입
16	(주)O	81,335,650	56,985,000원	을 16호증의 2에 의해 회수된 금액만 인정
17	(주)E	155,000,000	0원	사해행위 당시 부존재하거나 사해행위 이후 채권임.
18	(주)P	23,479,500	0원	변제 소멸된 상태
19	(주)I	313,500,000	0원	변제가능성이 낮아 적극재산에서 제외
20	Q	1,640,000	1,640,000원	다툼 없음
21	(주)R	104,500,000	0원	입금 직후 주식회사 S으로 이체. 상응하는 채무 존재가 인정됨.
22	(주)T	6,710,000	6,710,000원	다툼 없음
23	U(주)	22,326,920	0원	입금 직후 V에 이체. 상응하는 채무 존재가 인정됨.
24	W	8,492,000	8,492,000원	다툼 없음
25	D(주)	151,459,470	113,847,010원	37,612,460원은 입금 직후 V 등으로 이체. 상응하는 채무 존재가 인정됨.
26	(주)X	3,894,000	3,894,000원	다툼 없음
27	(주)Y	4,327,070	4,327,070원	다툼 없음
	합계		6,246,324,472	

별지

소극재산 표

순번	항목	원고 주장액	인정액	근거
1	Z카드	1,196,000	1,196,000	다툼 없음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750,000	18,750,000	다툼 없음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0,000,000	200,000,000	다툼 없음
4	국민건강보험공단	60,047,680	42,435,620	갑 6호증, 을 25호증 사해행위시까지 발생한 금액
5	AA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1,000,000	0원	갑 7호증, 임대차 종료된 상태.
6	(주)AB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0	146,000,000	갑7호증 연체차임 5,400만 원 공제
7	(주)AC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	20,000,000	갑 7호증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증거 부족]
8	시흥세무서	350,705,550	117,759,465	갑 8호증, 을 19호증 사해행위시까지 발생한 금액
9	임금채권자 AD	9,074,697	9,074,697	갑 9호증
10	시흥시청	4,355,330	4,355,330	갑 10호증
11	임금채권자 AE	12,621,283	12,621,283	갑 11호증
12	AF	20,295,410	20,295,410	갑 12호증
13	임금채권자 AG	15,385,459	15,385,459	갑 13호증
14	임금채권자 AH	11,214,840	11,214,840	갑 13호증
15	임금채권자 AI	5,125,236	5,125,236	갑 13호증
16	안산시 단원구청	13,287,040	1,301,030	갑 14호증, 을 24호증
17	임금채권자 AJ	9,527,291	9,527,291	갑 15호증
18	중소기업은행	5,168,000,000	5,168,000,000	다툼 없음
19	주식회사 AK	260,865,220	260,865,220	갑 16호증
20	임금채권자 AL	12,550,203	3,591,870	사해행위 당시 미발생(퇴직금은 포함)
21	임금채권자 AM	13,738,662	3,946,993	사해행위 당시 미발생(퇴직금은 포함)
22	임금채권자 AN	6,983,324	1,983,323	사해행위 당시 미발생(퇴직금은 포함)
23	임금채권자 AO	10,440,343	3,773,676	사해행위 당시 미발생(퇴직금은 포함)
24	임금채권자 AP	11,458,211	4,166,543	사해행위 당시 미발생(퇴직금은 포함)
25	AQ 주식회사	330,933,579	330,933,579	갑 19호증[피고 주장의 이체시점 고려할 때, 권리신고된 채권에 대한 변제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려움]
26	AR	248,081,482	0원	리스 기계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것과 균형
27	V	375,794,141	0원	리스기계 등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것과 균형
28	주식회사 AS	36,842,540	36,842,540	갑 20호증
29	AT(가압류채권자)	83,688,000	83,688,000	갑 20호증
30	AU주식회사	200,000,000	200,000,000	갑 20호증
31	피고	321,000,000	321,000,000	피고와 증인 AV 주장의 2017. 5. 1억원 변제 는 인정할 증거 없음.
32	AW	171,902,830	171,902,830	원고 채권
33	AX	152,900,000	152,900,000	갑 22호증
	합계		7,378,636,235	

별지

양도 대상 채권

- 채권자: 주식회사 C
- 채무자: D 주식회사
- 채권의 내용: 2017년 6월분 외상매출금 113,847,010원

1) 을 13호증의2(채권양도각서)에 기재된 날짜이다. 작성시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일응 위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본다.

2)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였다(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